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(김순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9월 5일

발 의 자 : 김순길 의원

찬 성 자 : 이기수 · 이기돈 · 박경희
윤선경 · 황춘하 · 이진삼
이경선 · 김혜미 · 박상홍
홍길식 · 서호성 · 장숙이
의원(12인)

1. 제정이유

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안에 관한 소송수행 등 서대문구의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축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, 제5조)
-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, 법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. (안 제4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고문료 등의 지급기준을 규정함 (안 제8조)
-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제척사유 근거를 규정함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4. 9. 5 ~ 9. 25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.)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,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
3.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,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
4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
5.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.

③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.

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
2.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중인 법학교수
3.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

인 사람

- ②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- ③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.

제5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를 마쳐도 수행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
3.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
4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6.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7조(회의)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고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을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제9조(소송수행 위임)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송비용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승낙서

본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입법·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(인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회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위 축 장

주소 :

성명 :

귀하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